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52903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5290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2205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포

변론 종결 2017. 7. 13.

판결 선고 2017. 8. 17.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2205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6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4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앞에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에 13년 이상 종사한 회사로서 경제적 지위가 아주 열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로 인해 재입찰 공고부터 다른 업체와의 위생소독용역 계약 체결까지 3개월 가까이 용역업무수행이 지연된 점, 통상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고 있고"를 추가한다.

나. 4쪽 20행과 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원가산출내역을 입찰공고 시 함께 공지하지 않은 점, 원가산출내역에 연차수당이나 사무실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작업 착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 점 등을 원고의 잘못으로 들면서 이로 인해 피고에게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예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입찰공고 당시 입찰진행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사업기간, 사업 추정금액, 예비가격 등을 미리 알린 이상, 세부적인 원가산출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에 의해 착오가 유발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준민

판사김지영

판사류일건